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6

제안년월일 : 2005. 4. 11
제 안 자 : 이현택의원외 6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05. 1. 27)으로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 삭제 (제3조 삭제)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삭 제〉